

검사(이회동)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25311
----------	-------

발의연월일 : 2023. 11. 9.

발 의 자 : 김용민의원 등 168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회동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이회동

직 위 : 검사

탄핵소추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면담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와 기소 권한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일 것인데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명정대한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결국 피의자 김웅이 불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 및 불기소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검찰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고하여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이처럼 검찰 스스로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통해 기소한 전력이 있었다면 범죄 혐의에 있어 훨씬 더 위중하고 해악이 큰 검사 이희동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 의혹을 받는 경우는 더 철저하고 집요한 검증을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손준성과 김웅이 관련된 고발사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검찰 내에서는 오히려 고발사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하였다. 고발사주와 관련하여 조사한 공수처가 김웅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밝히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행태를 거쳐 결국 불기소를 하고 말았다. 김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피소추자 이희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허위 내용이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나 징계는 전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김웅에 대한 불기소를 이미 결정한 후 짜맞추기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의 연속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과 언론, 정치인 등이 결탁하여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질서 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까지 하였는 바, 이러한 행태는 검사의 직무상 위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2020. 4. 15.) 12일 앞둔 2020. 4. 3. 경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에게 ① 조선일보 2020. 4. 3.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쉬롭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 기사 링크, ② 진중권 페이스북 「'윤석열을 잡아라' -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 게시물, ③ 지현진(필명 이오하) 등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사진 88장, ④ '제보자X는 지현진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이후 손준성 검사는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고발장 관련 자료인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취합한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손준성은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 (피고발인 황희석, 최강

욱 등 13명,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20. 4. 8. 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2차 고발장(피고발인 최강욱, 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현직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국가질서를 혼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법질서 수호 및 객관 의무가 있는 검사가 한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부정한 목적과 법질서 위반의 중대함이 심히 지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파악하고 범죄행위 가담자를 처벌해야한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에서는 고발사주에 가담한 김웅에 대하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이었던 피소추자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고발된 김웅과 관련한 수사를 책임지는 부장검사로서 당연히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허위 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김웅에 대

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로 인해 공수처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증인신문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조성은의 휴대폰 포렌식을 담당한 박모수사관에 대하여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김웅을 2022. 9. 29. 불기소로 처분하였는데 불기소 처분 한 달 전인 2022. 8. 29. 피소추자는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본인의 방에 불러 대화는 나눈 후 문답형식으로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박모수사관 면담 후 이희동(구체적으로는 이희동의 지시에 따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이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이희동이 박모수사관과 나눈 대화를 주된 것으로 하는데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손준성과 김웅, 조성은 사이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이희동과 박모수사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면담보고서에는 이희동이 손준성과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4가지 경우를 나뉘어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박모수사관과 나눈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2. 12. 5. 손준성 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법정에 출석한 박모 수사관은 면담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손준성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회동과 손준성이나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3자 개입가능성’과 관련한 대화 역시 나눈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피소추자 이회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에는 이회동이 박모수사관에게 4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하여 문답을 하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피소추자와 박모수사관은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 이회동과 박모수사관이 면담을 마치고 약 한 달 뒤인 2022. 9. 29.에 김웅에 대하여 불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고 그 논거는 이회동이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피소추자 이회동이 허위 내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듯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기 위함이 자명하

다. 허위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개입’ 여부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 박모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희동 검사와 더불어 고발사주 사건에서 포렌식 등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다. 손준성 측은 소위 검찰식구인 박모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허위면담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박모수사관은 2022. 8. 29. 이희동 검사의 방에서 이희동과 면담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며 대화내용 역시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존재가능성”에 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복하여 증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면담을 한 주체인 이희동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이희동 검사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희동 검사는 2023. 9. 20.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으로 영전을 하였다. 향후에도 검찰의 이희동에 대한 징계와 수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허위 내

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김웅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 또한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¹⁾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1)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헌법 제69조)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은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회동 검사의 범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회동 검사를 오히려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에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김웅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책임자로서, 피의자 김웅을 조사함에 있어 객관의무를 다하며 실체발견에 노력을 해야했음에도 오히려 허위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연히 김웅을 불기소처분하였는 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할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희동 검사의 행태는 관련 법률조항을 직접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형법 위반

1)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하고 문답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희동 검사와 면담을 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이희동 검사와 면담한 내용과 이희동 검사가 작성한(구체적으로는 면담에 참여한 부하직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이희동 검사가 면담을 하겠다고 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희동 검사로부터 손준성 관련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텔레그램에서 무엇을 보냈다면”이라는 가정적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면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4가지 (텔레그램 전달)가능성으로 나누어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이렇게 나눠 대화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그러한 것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 같다고 답변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증언하였다.

즉,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애초부터 손준성 검사나 김웅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면담보고서에는 마치 손준성과 김웅의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면서 4가지 경우를 나누어 문답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면담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면담보고서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회동 검사는 포렌식 담당 수사관과의 대화를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허위 내용으로 기재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피소추자 이회동 검사는 김웅에 대하여 직접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손준성과 김웅의 공모가능성을 부인하는 강력한 논거로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는 허위면담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바, 허위 면담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회동 검사의 행위는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회동 부장검사는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본인의 부하 직원인 수사관을 참여시키고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한 후 수사관에게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

서 작성은 이희동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수사관에게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한남용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남용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김웅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는 수사권자로서 피소추자 본인이 작성한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참여검사인 최두현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직접 면담하고 그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 참여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개입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허위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수사 참여 검사가 상관인 피소추자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여도 허위 여부를 밝혀내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수사 참여 검사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

5)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는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 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 이희동은 피의자 김웅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 사관을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작출하여 이를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이희동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출행위는 허위 내용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소추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하였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형법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범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불기소처분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웅은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소추자가 고발사주의 실체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일임과 동시에 검사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포렌식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고 포렌식 담당수사관이 하지도 않았던 “제3자의 개입가능성” 등 여러 대화를 임의로 작출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면담보고서 내용은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피소추자의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죄 가담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

책을 제시하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검사의 중대한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사용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을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고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인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나 조사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결국 김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발견은 요원하게 되었다. 선거국면에서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이러한 범죄행위 결과는 헌법질서 문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피소추자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의 심각한 침해와 국기문란 사태가 도래하였다. 피소추자의 행위로 인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발견은 힘들게 되었고 잘못을 한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요원해지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① 김웅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 ② 2022. 12. 06. 뉴스버스<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 ③ 2022. 10. 06. 오마이뉴스 <김웅 불기소이유 봤더니...검사들 증거삭제가 결정적?>
- ④ 2022. 12. 08. 한겨레<부장검사 방에서 김웅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 보고서 작성>
- ⑤ 2022. 12 7. 미디어스<검찰, ‘김웅 고발사주 불기소’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 ⑥ 2022. 12. 10. 고발뉴스<‘허위공문서’ 김학의 사건때는 기소.. ‘김웅 사건’ 이회동 검사는?>
- ⑦ 2022. 12. 20. MBN뉴스<검찰,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의혹....공수처 수사 착수>
- ⑧ 2022. 12. 20. 뉴스1<검찰, ‘김웅 불기소’ 보고서 조작 의혹.... 공수처 수사 착수>
- ⑨ 2022. 12. 21. 뉴스버스<검찰, ‘고발사주’ 김웅 불기소 ‘조작 수사’ 무리수 왜?>
- ⑩ 2023. 03. 29. 시사IN<보고서조작,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의 흔적 [고발사주 법정중계 4차·5차 공판]>